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3280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3280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0가단1428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규진, 김태창

변론 종결 2024. 8. 21.

판결 선고 2024. 10. 2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0가단14287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1) 과 피고 사이에 2018. 9.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17. 접수 제147404호와 제14740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A"을 『A』으로, "피고 B"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다금"을 『다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1행의 "앞서 본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임대차내용확인서(을 제5, 7호증)는 A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전달받은 임대차내용확인서가 A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직접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제3자의 임의 작성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가 그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필적이나 인영이 A의 것인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2018. 9. 10. 공동담보인 J건물 K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고(을 제12호증 참조), 2018. 9. 17. 위 공동담보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임대차내용확인서를 전달받았으며(을 제5, 7호증 참조), 2018. 9. 19.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던 점(을 제6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별지

1) 원고의 2021. 4.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항소장에 기재된 'P'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